

제421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23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2.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8.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1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1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1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13.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1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1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8)
1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1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2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 

### 상정된 안건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7
2.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	7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	7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	7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	7
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7
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	7
8.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	23
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	23
1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	23
1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	23
1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	23
13.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	23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	32
1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	33
1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48) .....	34
1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	36

---

(10시10분 개의)

### ○소위원장 이원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심사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게 있어서 다 설명은 못드렸고요 몇 분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농가 경영 안정 추가 지원방안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후계농 육성자금 또 무기질비료 문제 또 도축장 전기료 할인 혜택 종료 문제 그 세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예산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종료돼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부터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재부나 총리실이 워낙 일들이 몰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권한대행께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기재부에 긴급하게 빨리 검토를 해라 이렇게 특별지시를 하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늦게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계농 육성자금은 작년에 예산이 8000억이었다 연말에 1000억을 더해서 9000억을 더 썼는데 올해 예산이 6000억만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4500억을 더해서 1조 500억을 지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선정이 되고서 자금을 못 받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 거기까지는 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더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비료업체는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비료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금년 예산이 원래 4000억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5000억으로 늘렸고.

지금 비료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싸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니까 가급적이면 비료 가격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정부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료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자금은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장 업체들이 조금 경영 애로를 겪으니까 도축 수수료를 올려서 축산 농가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확보된 예산 800억에다가 이번에 271억을 더해서 1071억을 하기로 했고요.

또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데에다가는 저희들이 우선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 업체들이, 매년 보면 소 도축장의 경우에 한 1만 원 정도씩 도축 수수료를 매년 올립니다. 그 이상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동결하기로,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소규모

도축장들은 일부 조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올리는 것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농지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찾아가면서 추가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상임위를 2월 달에 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제가 하나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청년농들 같은 경우는 임대든 토지든 계약 자재든 계약자에 한해서만 구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농으로 선정된, 앞으로 계약할 청년농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일단 계약을 했는데 못 받은 분들은 100% 해결이다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추가로 뽑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자금 사정까지 같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1조 5000억 정도면 아마 대부분은 새로 뽑는 분들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금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도가 1인당 5억까지 돼 있는데 보통 받아 가시는 게 한 3억, 2억, 1억 얼마씩 그렇게 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자금 안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1인당 5억 대출로 보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2억, 3억 기준으로 할 때는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또 신청을 얼마를 받아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파악,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 신청받고 또 확인이 되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도 좀……

○문대림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어쨌든 실제 집행 과정에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는데 농협에서 소득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후계농이나 청년농들인 경우에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께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협 측과 협의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얘기도 전달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축장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한 사오십 군데는 인상을 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먼저 한우.....

○**문대림 위원** 이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인상한 데가.....

○**문대림 위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인상.....

○**문대림 위원** 인상 유지한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인상한 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료 할인을 했을 때에도 매년 보면 한 1만 원 정도씩, 한우의 경우에는 돼지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고 돼지의 경우에는 계열화된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부가 해당될 텐데, 그 정도 올리는 거는 매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삼십%씩 올리겠다고.....

○**문대림 위원** 넘어서서 올라간, 올린 그 도축장이요 한 사십여 군데 된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좀 조정 작업이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대처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미애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까지만 하고 법안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대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농협 측하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771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사실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긴급 추가 지원액으로 나온 건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지금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차보전 예산, 이것은 대출 규모로 5771억이고요.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이게 1% 수준이니까 아마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차보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당겨서 쓴 것이고요. 이번에 당겨쓰면서 기재부하고 이야기한 것은 후에 가서 나중에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한 자금은 이·전용이 됐든, 만약에 추경이든 다른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추

가로 더 보충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본예산에서 이 문제가 의결이 된 예산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따로 가지고 오는 예산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내역 변경의 경우에는 장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관 승인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전용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이·전용이 아니고요. 이차보전 예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역에 이 내역이 얼마, 이 내역이 얼마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것을 우선 이렇게……

○**임미애 위원** 그것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이 되었던 건지 원자료에 대한 저희가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의결 과정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라면…… 예비비 사용할 때도 이것 보통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지방의회의 절차와 국회의 절차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비비는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기로 돼 있고요.

○**임미애 위원** 사후 승인인데 보통 그래도 보고합니다, ‘이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5771억 원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후계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교육 기간을 거쳐 가지고 실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후계농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발하게 되고 일정 부분의 교육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이런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성공한 사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돼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그냥 빚으로 남게 되면 정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저희가 청농 영농정착 지원자금을 주는 청년농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영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지원을 하고 그분들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정착률이 한 90%가 넘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차관님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업경영인들 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옛날에 농업 경영인들 자금을 받은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농업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확인을 해 보면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년 육성 자금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거는 좋은데 이것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내가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 사업을 아마 내실화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충실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2.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10시22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7항까지가 있는데요 소위 심사자료는 6항까지, 2번은 7항입니다. 연달아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총 30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4일 공청회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에 신중 접근 의견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한우농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주문하셨고 한우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소규모 한우농가 보호 및 사료비 등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조문과 관련해서는 한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한우산업법 제정 전에 한우의 유통구조 개선, 공급과잉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 제정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폐지되는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다면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성, 다른 법률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5개 법안 대비표가 있고요, 총 24개 또는 25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명암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 개정안의 차별적인 내용들입니다.

시행일은 공통적으로 공포 후 1년입니다.

11쪽, 12쪽은 주요내용을 요약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표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법의 목적입니다.

기후위기 예방 또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소득증대, 경영 안정, 다양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송옥주 의원님께서 한우를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라고 명확하게 적시하셨는데 공청회 때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되는 송아지를 한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한우농가는 이미 협회 또는 등록된 자 12만 3000개로 할지 아니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송옥주 의원은 제4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반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윤준병 의원님 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7번으로, 실태조사 및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8번으로, 한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윤준병 의원님이 제2항에서 2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심의회, 조절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45페이지, 10번입니다.

한우수급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수급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3항에 농림부장관이 수급, 경영비를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  
옥주 의원님 안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11번, 연구기술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탄소저감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저메탄사료 및 한우부산물 이용 등이 있고 송옥주 의  
원님께서는 저단백사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54페이지에 보시면 윤준병 의원님은 한우농가의 저탄소 노력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축·출하 장려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영비용부담 완화 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문금주 의원님  
안은 사료 외에 백신예방접종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16번, 교육 지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한우농가에 저탄소 사양교육, 부가가치 향상 등의 교육 실  
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어기구·송옥주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자급률, 한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  
습니다.

71페이지의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인데요, 이는 현행 축산법 32조를 이원택 의원님 안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원택 의원님께서 축산법 현행 3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경영 컨설팅 지원과 자금 지원 시 우대사항이고.

78페이지에 보시면 송옥주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구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부산물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개발 내용이고.

82페이지에 보시면 송옥주 의원님께서 부산물 유통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한우 판매 및 소비 촉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85페이지에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있고, 송옥주 의원님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내용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에 도축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현대화 관련 필요한 예산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내용이 있습니다.

91페이지에는 해외 개척, 수출 검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수출 판로 확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는 어기구 의원님께서 유일하게 한우 품평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94페이지에서는 기업이 한우 생산업 진출 시 생산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원택·문금주 의원안이 있습니다.

28번, 29번은 생략하고요.

공포 후 1년 후 시행입니다.

이어서 소위 심사자료 2번, 축산법 조경태 의원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이 개정안은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축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3쪽과 4쪽에서 앞서 보고드린 한우 지원법과 조경태 의원이 발의하신 축산법 개정안을 각 주제별로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시책의 시행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교육·홍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교육·홍보·전문인력 양성을 하나의 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가축 분뇨와 축산 분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기본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제출 의무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통합·활용을 위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저희 일부 자구 수정, 정보, 자료 또는 이런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근거 마련하는 내용인데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의 22조의2, 32조의5에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일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축산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내용인데 개정안 수용 시 본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에 축산기술 관련 조사·연구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법 6호의 ‘내장’ 등을 좀 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부산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출 진흥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축·가공장 현대화 관련 내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내용인데, 과거 축산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6년 정도 시행하다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4쪽의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에 동일하게 1년 후 시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부의 입장은 한우 지원법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축산법에 있는 내용들하고 대부분이 중복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한우에만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1권 11페이지부터 5건 제정안 주요 내용 비교 보시면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시행계획, 이것도 한우뿐만이 아니라 양돈도 뭐도 다 해야 될 거고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한우뿐만이 아니라 양돈·양계 다 해야 되는 내용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조절, 탄소저감정책, 도축출하장려금, 경영비 부담 완화, 경영개선자금, 자금률 확보…… 사실 한우만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한우뿐만이 아니라 양돈·양계 다른 축종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법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우 지원법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내용들을 축산법에 반영해서 축산법에서 축종별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체계상으로 축산법이 있고, 한우법을 따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축산법에서는 한우를 제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축산법에 있는 한우하고 관련되는 조항은 축산법하고 똑같이 한우법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축산법에서는 한우를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내용들은 현재 있는 축산법으로도, 다음에 법에 내용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취지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축산법 개정안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정부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만든 대안을, 수정안을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차관님, 제가 볼 때 이 법안심사에서 내용은 큰 틀에서 쟁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쟁점 설명에는 시간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축산법 체계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별도의 법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이게 핵심 쟁점인 것 같으니까 이것 설명하실 때 시간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부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좀 짧게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3조에 지금 현재 조항에는 협행법에는 축산발전시책이 강구로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종합계획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3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해서 교육·홍보·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 강조해 주신 부분을 넣고. 또 3항을 따로 만들어서 시책 수립 조항을 정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죽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3조의2 5항에다가……

○소위원장 이원택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페이지가 안 써져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있어요, 밑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페이지 보시면, 시도의 시행계획도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조의3에 실태조사 내용은 현행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축산발전심의회에도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시책하고 기본계획을 다 심의하도록 그 내용을 반영했고요.

9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했고요.

11페이지에 가축의 생산, 출하 조절 이 부분도 제기해 주신 내용대로 반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연구 사무 넣었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의 수급조절협의회도 품목별로 하도록 그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14페이지, 유통개선 수출 진흥 이 부분도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추가로 다 반영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한우법에서 한우라고 하는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대책을 만들거나 할 때 주요 축종별로 그것을 각각 만들 수 있도록 근거까지 축산법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지금 한우법을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우법을 발의하려고 개정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내면 같이 여야 합의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도 사인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한우법 자체는 여야가 합의돼서 같이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오늘 한우법을 심사해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의하는 대로 통합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 시간과 관련해서는 12시 정도, 저희들도 의총도 있고 또 본회의가 있어서 준비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12시 전후로 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농자재법 등 심사는 하되 의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정희용 의원실에 이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초지법이라든가 차산업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가 빨라서 의견이 모아지면 결정하겠습니다, 뒤에 법들은.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덕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취지는 개정은 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축산법에 다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쟁점은 사실상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수용하겠는데 입법 형식을 개별 법보다는 축산법에다 몰아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나 박 차관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입법적으로 축산법에다 넣느냐 또는 개별법으로 만들고 축산법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구성하느냐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안 내용을 보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특수성이 있어서 개별법에다 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대신에 축산법이 전체를 일괄할 수 있는 일반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일반법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이 내용은 담아낼 수 있다, 특수성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에다 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별법적으로 가도 좋겠다고 그러면 입법적으로 그것을 담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우농가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물론 우리 축종별로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특수성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별법적인 지위를 좀 보장받아서 한우의 육성이나 또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담보받고 싶다 하는 취지의 요구들이 있는 만큼 입법적으로 그 요구들을 우리가 꼭 수용 못 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는 없다,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좀 열고 개별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축종적인 내용이 있어서 꼭 여기다가 일반법적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축산법에다 일부 보완을 하시고 또 특수성이 있어서 한우지원법이라는 개별 축종의, 한우에 관련된 개별법을 만들면서 거기다 담아야 될 내용은 거기다 담되 중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율, 조문적인 조율을 하는 부분은 좀 조율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우와 관련된 특수성이 있는 내용을 축산법에다 굳이 인위적으로 넣어서 거기다가 방대하게, 축산법이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임에도 불구하고 한우와 관련된 특수성 있는 내용을 거기다 다 담아 가지고 이게 일반 법인지 축산법 자체가 한우법인지를 혼동 시킬 수 있는 조항들 이런 게 혼재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대로 한번 보시고, 내용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이것은 개별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축산법에다 넣는 게 옳겠습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한됐지만 이것은 한우법에다 존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닥 정리를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입법정책적인 내용하고 입법기술적인 내용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을 우리도 점검해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축산법도 지금 빠진 내용들이, 지금 입법된 내용 중에서는 누락돼 있기 때문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또 축산법도 반영하고 한우법적으로도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분리해서 한우법적인 개별적 법을 만들되 축종 간의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는 체계로, 축산법과 한우법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이번 기회에 입법적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도 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봐 가지고 우리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좀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차관님, 지금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양돈은 계열화가 많이 돼 있고요. 그중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기업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박덕흠 위원** 아니,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상위권으로 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육계의 경우에는 거의 다 계열화가 돼 있다고 보고요. 90% 이상 다 계열화가 돼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양돈의 경우에는 한 절반 이상 돼 있다고 보고요.

○**박덕흠 위원** 한우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회사들이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박덕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우는 소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시장가격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보통 한우가 더 크지. 결국은 축산물이 한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 축종들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한우법을 만드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깊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우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계열화라든가 대기업들이 진출한 그런 게 작잖아요, 아주. 미세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우법을 만들어도 내가 볼 때 이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우법을 발의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훌렸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의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씩 키우니까 가격 변동의 사이클은 훨씬 더 장기적입니다, 이렇게.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나 산란계나 그에 대한 가격 변동 폭은 짧게 짧

게 변하는 게 더 크고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법안에서는 한우에만 특별하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 크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축종별로도 보면 개별 축종법이 있는 게 낙농진흥법, 양봉산업법 이런 게 있습니다.

낙농진흥법 같으면 낙농에만 다른 축종하고 전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집유 과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유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을, 품목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이동형 양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등록제도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그 개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우에만 특별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축산법을 벗어나서 한우에만 특별하게 적용해야 될 제도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우협회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그려면 특별하게 뭘 내용으로 할 거냐. 지금 있는 내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따로 한우만 적용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보고 특별하게 적용할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낙농 지원……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여기 문금주 위원님 아까 손 드셨고요.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질의는 여기까지 마쳐도 될까요?

임호선 위원님 방금 손 드셨고 그렇게.

○**문금주 위원** 차관님, 일단 우리 축산법에서 다루는 축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기타 가축까지 하면…… 그러니까 주요 축종이 있고 기타 가축이 있어서요. 한 열몇 가지는 넘을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 시행령까지 따지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6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산업의 생산액으로 보면 돼지가 크고요. 그다음 한우 2위로 될 것 같고요. 종사 인력으로 보면 한우가 1위고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60가지가 넘는 축종을 다루는 축산법에 한우법 제정 취지를 담아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보면 한우가 그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한우만 별도로 만들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그런 60가지 넘는 축종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구축하면…… 과연 다른 미미한 축종까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한우산업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징적인 대표 산업이라고 본다면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게 맞지 60가지 넘는 축종 중의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축산업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하게 한우에만 적용되는 그것을 못 찾아서 그런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없는 거지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축종은 개별법이 없다고 하면, 처음 이번에 한우를 개별법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되 이미 또 다른 축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축산법에 축종별로 만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냐 그 문제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문금주 위원** 제가 봐서는 농림부에서 한우법을 별도로 만들면 다른 축종에서 형평성을 들어서 만들어 달라 계속해서 요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실제로 있습니다, 있기는.

○**문금주 위원** 다른 축종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돈의 경우에도 생산액으로는 더 크니까요, 한우보다.

○**문금주 위원** 한돈도 만들면 되는 거지요, 지금 한돈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법 체계나 입법정책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고, 그러니까 공통되는 것은 축산법으로 넣고……

○**문금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별법을 요구하는 데는 지금 한우하고 한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요구들이 나올 거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우도 그렇고 한돈도 그렇고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꼭 거기에 필요한 법들, 개별 조항들 찾아서 저는 한우농가나 한돈농가들 위해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제가 법을……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답변이 비슷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차관님, 한돈은 계열화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돈도 한 절반 정도 제가 알기로 계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양돈은 거의 계열화가 됐고 양계도 거의 100% 계열화됐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육계는 거의 100% 계열화가 돼 있는 거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들이 굳이 한우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에 대해 저는 정확히 한우협회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예, 뭐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우협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지요. 그때 까지 가격이 엄청 좋다가 지금 최근 몇 년, 작년·재작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한우협회 요구사항들이 나왔고 그것 중의 하나가 한우법 제정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아니고요. 한우농가가 가지고 있는 위기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에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한우 생산농가가 지금 한우 생산으로 인해서 얻는 농가소득이 양돈을 제외하고 굉장히 높아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한우산업을 계열화하는 순간 농가 입장에서는 노동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가소득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를하게 되는 거지요.

계열화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양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병아리를 대기업에서 주는 거잖아요. 사료값 받고 내 노동력만 투하를 해서 일단 개체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소득을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이마다 보니까 질병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아리의 주인이 농가가 아니거든요. 병아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나와도 누가 가져가요? 대기업이 가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은 생산농가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차피 나눠야 되니까, 그것은.

○**임미애 위원** 예,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오랜 시간 농가가 싸우면서 공정거래법상의 농가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게 그렇게 정착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농업 생산 주체가 주체가 아니라 기업이 진출함으로 해서 농가가 노동자로 전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농가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 농가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산업에 대기업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일부 축협에서 생축장을 운영합니다. 생축장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비육의 경우는 농가에다가 해서 위탁 사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좋은 측면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축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경우는 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생겨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양계산업에서 보여 줬던 문제가 똑같이 한우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한우농가의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법에서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요 기업의 진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제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농림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낸 법안에는 최소한의 조치예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농가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수준인데 농림부는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한우법 제정의 핵심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수정란으로 태어난…… 그래서 젖소 어미에서 태어난 소가 한우냐 아니냐 이것도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진출 문제에 대해서 농가가 갖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축산법에 보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축산업 영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이 1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IT 업계, 자동차 업계 이런 쪽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일정 부분 해서 자회사를 만들든 뭔가 계열사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소리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한 조치를 농림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농가를 설득하는 데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산법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으로는 농가를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진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답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이 축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 그 문제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헌법상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한할 정도로 필요한 거냐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 농업은 완전 경쟁산업입니까, 아니면 불완전 경쟁산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경쟁산업이지만 시장 실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산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럴 겁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게 바람직한지 사실은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농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법으로 제한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저희들이 그래서 계열화법을 만든 이유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기업들의 힘으로 농가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열화법을 만들었고 그 계열화법에 따라서 계열농가로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단체로 협약할 수 있는 권한부터 여러 가지를 다 줘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우도 계열화법에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제가 한우협회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또 그것은 쉽다고 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자본이, 왜 농가들의 자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가를 더 키우고 그래서 기업화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는지, 저는 사실 농림부가 해야 할 일을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논의가 좀 길게 되어야 하는 거여서 오늘 이 자리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 차수에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할 때 중요한 쟁점이니까, 오늘

챙점 확인을 했으니까 농림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지금……

○**임호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반법적인 축산법 그 다음에 개별법으로서 한우지원법을 이렇게 위상을 놓고 보면 추상적으로 포괄하려고 하면 용어 사용으로 하면 그냥 일반법에다 넣어도 다 포섭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모두를 포괄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인 내용을 사실은 포괄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또 맥이 달라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업 진흥 전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의 일부로서 한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섭한다고 그러면 한우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반어적인 입장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또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도 전체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도 다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주요 내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전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지금 그중에 문항으로 ‘축종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오히려 개별법적으로 만들고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에서 그 범위를 넓혀 가면서 개별법적인 내용이 우선하도록 만들면 입법체계적으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바람을 한우농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내용이 어려움이 있으니, 특히 한우는 일반 축종의 시장 기능에 맡겨 놓기보다는 한우의 특수성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보호도 받고 한쪽에서는 소비와 연계되어 있는 기본 육종산업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줘라, 지금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어려움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이런 취지의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한우농가 또 한우에 관련되어 있는 한우의 보호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특별히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포괄해서 수용이 가능한 내용 넣었으니 없애시다 이렇게보다는 현실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정부도 하고 정치권도 하고 이런 기회 삼아서 좀 배려하고 있고 작동이 되도록 특별히 지원한다 하는 작동체계를 법적으로 만들어 줘라, 이게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담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마이크가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한우농가들 보면 청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후계자 농업인, 청년농들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한우 쪽에는 젊은층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구만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들어와서 하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우법은 그렇다 보면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하나의 전략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비농업인들의 한우 사육 증가율이 높아져요. 지금 제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증가율을 보니까 85%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육 두수 증가율은 27%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 한 3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기에 대입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농업법인을 위한 법인세 면제, 면세유 제공 등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면세유는 축산의 경우에 적용 안 되는 걸로 제가.....

○**박덕흠 위원** 대기업은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면세유 적용을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법인세 면제 이런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법인세도 축산은.....

○**박덕흠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면세유는 축산농가여서가 아니고 농기계별로 농기계 등록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축사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면 그것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지요. 농기계는 아예 거기에 등록된 거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급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업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농업인이면, 농업경영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대기업이 그것 하는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계 같은 경우 거의 계열화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만도 많아요. 왜냐하면 노동자 갑과 을로 완전히, 갑·병 같아. 귀속돼서 꼼짝을 못 해. 할 얘기도 못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거기서 큰소리칠 수 있겠어요, 그쪽 대기업한테 농업인이? 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고. 왜냐? 자기들이 불합리한 혜택을,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생길까 봐 못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계열화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진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그 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 대기업 진출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차관님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 공청회 때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법은 별도 제정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26년도 미국 소고기 관세 폐지되고 호주 2028년도 폐지되는 지금 이 시점,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7%까지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세가 낮아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관세 제로화된다면 일본 화우산업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저는 존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년도·28년도가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축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60개월까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우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특별한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한우법,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을 내 주신다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저도 짧막하게……

첫 번째는 저는 농업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축산에서는 한우가 제일 탄소배출량이 많잖아요. 우리 농업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인다고 할 때 특히 한우 쪽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료라든가 앞으로는 R&D 분야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거지요, 다른 축종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한우산업 전환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이 축종에 대해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계나 양돈에 비해서 배출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 육성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소들이 먹는 사료랄까 관리랄까 그다음에 비육 과정을 관리를 해야 탄소저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 농업의 국내 수급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농업이 세계로 진출을 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 한우산업 자체를 한우의 퀄리티 또는 양돈의 퀄리티 또는 육계의 퀄리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우의 퀄리티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인식과 조사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육성·진흥하면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워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한우를 키우는 과정을 탄소저감으로 바꿔 주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워 가는 이런 것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한우산업법을 봐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양돈이나 양계도 퀄리티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용할 만한 단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법은 규제법, 기본법으로 가고 한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흥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축산 법은 기본법, 규제법으로 가고 나머지 우리가 키워야 할 축종이라든가 품종이 있다면 그 것은 좀 더 진흥을 시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따로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 법에 다 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종합계획도 똑같이 세우고. 오토바이 종합계획, 스쿠터 종합계획, 자동차 종합계획, 철도 종합계획, 같이 세우면 되잖아요, R&D도 같이 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항공기도 종합계획 같이 세워도 되고 R&D센터도 같이 다 그 법에 넣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별도법으로 만들겠습니까? 그 별도법을 다 만드는 이유와 과정이 그걸 진흥시켜 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박덕흠 위원님하고 정희용 간사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마 위원님들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우법을 만약에 따로 만든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한우는 다른 축종하고 다르게 30개월 이상씩 키우는 특별한 특성이 있으니 거기에 맞는 다른 제도를 만들자. 아니면 한우 같으면 이거는 우리 전통 가축이니까 여기에 유전형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존하는 뭔가 따로 특별한, 다른 축종하고 다른 뭔가 제도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는 못하고 이 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도가 몇 개는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것들을 붙여 가지고 법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다른 것도 당겨다 만드는데 지금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우협회라든지 다른 전문가들하고 한우에 맞는 다른 뭔가 제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찾아 가지고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엮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안 속도 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1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1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1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13.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1시17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번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총 16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4일 공청회가 있었고요.

진술인들은 법 제정에 동의하는 의견과 입법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주문하셨고, 특히 여러 지자체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서라도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유명무실해진 WTO 협정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정부는 재정 부담 등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6건의 제정안 취지는 농가의 경영과 농가소득 보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농가의 노력만으로 경영 위기에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농업소득 정체, 농가부채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정안의 경우 5년간 2조 8000억에서 또는 9조 6000억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비료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 경영비 지원근거와 관련해서는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제11조의2에 있고 그 위에 보시면 AMS 한도 초과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5페이지의 재정 소요는 참고하시고요.

9페이지의 WTO 협정상 AMS 통보 현황을 보시면 1조 4900 중에 초과된 현황은 없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명암 부분은 각 개별 법안의 특별한 내용이고요.

12페이지부터 14쪽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15페이지입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일반적인 입법 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표를 보시면 6건의 제정은 모두 필수농자재를 정의하고 있는데 비료·사료 또는 농업용 유류 또는 농업용 전기 등으로 다양하게 있고 김한규 의원님은 농업기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항들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인데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있고 노력을 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필수농자재 지원자금을 기재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현행 예산편성 절차와 유사해 보입니

다.

24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5년 주기 종합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인데요. 그 표를 보시면 지원대상과 지원품목, 지원조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품목은 농업에너지 비용 또는 농업기계를 하고 있고요. 지원기준과 관련해서 모두 다 임의지원이지만 어기구 의원님은 의무지원입니다. 다른 안은 다 임의 지원인데요. 50% 인상분 지원하는 내용 또는 70% 인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하고 있는데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구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에는 이개호 의원안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전종덕 의원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고, 정보시스템은 문대림·윤준병 의원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37페이지에 보시면 3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9페이지에 농자재 관련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안에만 규정돼 있는 내용인데요.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인건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다른 지원사항이 있는 경우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규정 등이 있는데 세 번째 조세감면 규정은 관련 조특법이나 지방세 특례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 내용도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개호 의원안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윤준병 의원님 안은 필수농자재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행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종덕 의원안은 환수에 대한 내용은 없이 부정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윤준병 의원님처럼 환수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6페이지에는 중복 지원 제한입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오른쪽 표에 보시면 7개 지자체에서 생산비 조례, 9개 지자체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의 권한의 위임·위탁은 필요해 보입니다.

60페이지에 별첨입니다.

거짓 등으로 필수농자재 구입 자금을 수령한 자에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에서 벌칙 수준이 보조금법보다 좀 완화된 점이 있고요. 제3자 제공·누설과 관련해서는 통계법에서 제한적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공포일인데요. 공포일 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법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계부처가 일단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지금 나와 있는 취지나 핵심내용은 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망 위기 때문에 공급에 애로가 있었을 때 그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 아니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를 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급망이나 이런 게 애로가 있을 때는 자기들도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올 것이고 또 다른 모든 산업,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애로가 생기면 그것도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만든 거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정부가 전체적으로 전 부처가 모여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이 만들어져도 그러면 공급망 애로가 됐든 가격이 올랐든 이를 판단하는 게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지는 않을 거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러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뭔가 판단을 받아야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WTO 농업협상에서 정하고 있는 감축대상보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생산 중립적이고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축대상보조가 될 거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공급망안정화법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농업협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축대상보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WTO로부터 저희들이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서 그때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근거조항이 이미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11조의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 항을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장관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기재부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다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장관한

테 의무를 주는 내용으로 그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시면 이 조항이 오히려 더 효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 문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2항을 신설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의무를 부과를 해 주시면 장관한테도 의무가 생길 거고 기재부에도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 주시는 게 지금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이렇게 제정하시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 관계부처라고 하는 데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전부 그렇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른 부처도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해관계도 사실상 없으면서 불똥 뒤까 봐 반대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관계부처 전부라고 하기 어렵고, 예를 들면 아까 예시를 든 게 소부장 지원 얘기하는데, 소부장은 훨씬 더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오히려 법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 때문에 소부장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올라도 그 자체 진작은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안 겪어도 키우려고 지원하고 있는 그 업종하고 필수농자재하고 같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소한 내용 가지고 반대 논리를 쓰는 내용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필수농자재 지원법과 관련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 경제안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기품목.

○**윤준병 위원** 이 내용이 안보품목, 위기품목 이렇게 정해져 있고 돼 있던데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농업의,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거기로 지정돼서……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포괄해서 지정이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4개 품목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내용도 대외비라고 알려 주지도 않던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윤준병 위원** 우리 농민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농사지으면서 농사에 필요한 필수농자재가 소위 경제안보품목이나 위기품목에 제대로 들어 있나? 위기품목에는 들어 있지도 않고요. 경제안보품목은 지금 뭐 2급 비밀인가 3급 비밀이라고 해서 알려 주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쟁기려고 하고 있는 필수농자재가 거기에 포섭이 일단 되어야 이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다 요청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을뿐더러 저

는 그걸 평계 대면서 이것 자체의 입법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도 좀 따져 보시고.

또 차관이 얘기해서 내가 한번 봤어요, 그 내용. 그런데 우리 필수농자재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 안 돼, 지금 현재 있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재·부품·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소재·부품·장비를 만들거나 해외에서 조달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소재·부품·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 조달하거나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나 농약 같은 경우도 소재·부품·장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을 게 아니고 제가 경영체 육성법에 넣자 하는 얘기가 지금 공급망안정화법에는 농업인 지원이나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보시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말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 지원도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우리 농민들이 기대할 때는 입법적으로 하면서 추상적으로 그냥 시늉만 내는 것 말고 법적인 체계라도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가시적인 또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추상적으로 용어 해 놓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전혀 예측도 불가능하고 어떤 내용이 수혜받아야 될 대상이고 지원받아야 될 내용인지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이런 입법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수용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도 입법적으로 비료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니 외연도 넓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화해서 그 내용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대처해 나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게 입법의 취지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것도 예상을 못 하는 내용 만들어 놓고 그 내용 가지고 ‘대체안입니다. 그 내용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입법의 취지를 전혀 몰각하는 거지요.

지금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농민들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몇 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갖고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외국의 여러 가지 무역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내용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좀 담아서,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그런 내용의 파고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생업에 종사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입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뭐 추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내용의 틀에 담을 수도, 사실은 의문이고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을 수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통치고 가자—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이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부처에서 반대하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는 고민을 함께 해 줘라.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노력을 차관께서 해 보셔야지 이렇게 통치고 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말씀도 아까 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AMS 한도 위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적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미국이나 중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

○**문대림 위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실제 허용치가 192억 달러인데 평년보조금 131억 그리고 특별보조금 160억, 합치면 291억. 이것조차도 축소 신고, 축소된 내용이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미 AMS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이 좀, 우리가 너무 얹매일 필요 없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가 무력화시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IRA처럼 ESG 가치를 입혀 가지고 그렇게들 해 왔다. 우리도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 5조 원입니까, 공급망안정화기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이 재원에서 농식품부가 확보할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기금은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쓰는 거고요. 지금 아마……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개 비료 회사에 3820억 원을 받았고요. 지금 2개 회사 600억 원이 심사 중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5조 원에서 몇 프로나 되지요?

이게 농업 분야를 반도체 산업이나 2차전지 산업에 적용시켜서 같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차관님이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WTO 감축대상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농림부는 적어

도 통상 관료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 농민·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받아 오고 있는 게 한 4500억 이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망 안정화 품목이라고 공급망안정화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경제안보품목으로 들어가야 작년에……

○**문대림 위원** 14개 품목이 뭐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4개 품목입니다. 주로 사료용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거기다 비료 원료들, 요소, 인산암모늄,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4개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외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윤준병 위원** 상급 비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업체 지원은 업체 지원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작년까지 우리가 했던 무기질비료 농가에 대한 차액 지원하듯이 그것을 기재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안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재부가 절대 인정을 안 해 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AMS 관련해 가지고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가능하나? 비공개로 해야 되니까 방망이를 두드리셔야 돼, 비공개.

○**소위원장 이원택**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회의록이……

○**윤준병 위원** 아, 비공개해도 여기 기록은 남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끝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윤준병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이원택** 쉽지 않네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호선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차관님, 농어업경영체법에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결국 예산의 범위거든요, 예산의 범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기지 않기 때문에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사실은 고민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도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노력의무만 규정하고 있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지원 근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서 대안이라고 주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 1항이 그대로 있는 한 사실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우리 정부에서 세운 예산안을 보면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사실은 우리 농가가 느끼는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법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늘어서 결국 이렇게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이르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에서 근본적인 고

민이 부족하신 것 같고.

대안도 이것 가지고는, 국회의원들 몇 명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과연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 없이 농업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사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이라고 하는 데 담긴 거지 않습니까, 현장의 고민들이?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물론 정부 차원에서 못 하니까 일부 광역 또 일부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이나 군의원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법이 딱 있으면 조례 같은 게 제정이 훨씬 더 쉽고 또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1개 광역시도 또 8개인가 몇 군데 자료에 있습니다만 시군에 그치는 게 이런 법적 근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관님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받아 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법에는 어떤 원칙 같은 것만 담기더라도 세세한 부분들은 위임받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시되 제정법에 지금 저희 몇몇 위원님들이 제시한 걸로 보지 마시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마지막 답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저도 제가 조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사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기존에도 요청해 왔지만 최근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기후위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상당히 농어업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앞으로도 또 기후위기 때문에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 예측 속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요구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 기후위기와 재난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 그래서 공급망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급망체계로만, 물론 공급망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지만 전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농민들이 농업을 계속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그래도 농업소득이 일정 정도 돼야 되는데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짝저짝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거다,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의 취지랄까 이런 것이 에너지 비용, 비료, 사료, 퇴비 등 여러 가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한번 다음 논의 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결국 그렇습니다. 이 법을 만들 경우에 이 법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때 정부가 필수농자재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거를 정부가 대통령령이 됐든 아니면 밑에 하위 법령으로 정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정부에서 정할 텐데 그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정할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공급망안정화법을 타자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저희가 예산을 떨 수 있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기후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후위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면 오히려 농자재나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따오기가 더 편한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은 WTO나 이런 데서 받아 볼 수밖에 없고……

결국 WTO의 취지는 생산 증가를 유발하는 농자재나 이런 것에 대한 보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역행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부담을 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명목을 따서 하는 게 사실은 지원하는데는 더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다음 법안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WTO와 관련해서 사실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WTO 규정을 안 지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WTO 규정이 과연 세계 경제 질서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소 기능이 사실 정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따 또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필수농자재법 관련한 심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

#### 1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11시47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14항 유상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4번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23조의 9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기구에 편입될 초지의 전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미 현행법 제9호에 따라 초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이 될 경우에 제주도나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도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강원도도 반대 의견이네요.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이미 현재 조항 안에서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의원실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마무리짓겠습니다.

---

## 1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11시49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15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5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2월에 1차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했는데 5년으로 명시할 경우에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차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 수용 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 소속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차산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문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1안은 다수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의무적 의견 청취를 규정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안은 5페이지에 보시듯이 임의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인데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 입법기술상 경과조치가 아닌 특례로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다 수용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제2안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 임미애 위원** 2안으로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페이지에 있는 2안으로 해 주시면……
- 임미애 위원** 임의적 의견 청취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건 의견 없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2안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 임미애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위를 둔다는 거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걸로 하는 걸로.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신에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예.
- 다른 의견 있으시지요?
- 그러면 이 법안은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48)

(11시52분)

-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16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6번 자료입니다.
- 2페이지입니다.
- 이 개정안은 화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 검토의견은 표에 보시면 현행 국산 화훼류 11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되면 578개 품목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전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 신중 검토 의견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될 경우 영세한 화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6페이지에 보시면 원산지 관련 국산 화훼류 11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원산지법에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질의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원산지표시법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 11개 품목이 국산이고 나머지가 수입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법에 의해서 지금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는 것은, 국산인지 수입인지 이게 몇 품목인가요? 실제로 다 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필요한 품목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안 되니까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품목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원산지표시법에서, 그 법에 따라서 품목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원산지표시법에서 품목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거는 법 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님, 소위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별표 1에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국산 농산물은 222개, 수입 농산물은 16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수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취지를 어디에서 반영시킬 것인가가 분명하게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확대해야 된다면 원산지표시법에서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를 할 게 있으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임미애 위원** 화훼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것은 시행령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 이 법안을 제출한 의사가…… 어느 구석에서든 담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법안 개정안 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원산지표시법에 있는 법안 문구하고 똑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있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하게 되니까 입법적으로는 원산지표시법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본 거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추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화훼농가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다음에 과학적·기술적으로 저희들에게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저희들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논의해서 추가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지 않으면……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이 부분은 이병진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이병진 의원하고 어떤 품목을 추가해야 할지 그런 의견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임미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정희용 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이유로 안 된 거지 않습니까, 21대 때도?

○**소위원장 이원택** 아, 그러면 시행령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정희용 위원** 그때 21대 때도 같은 이유로 못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또 같은 내용을 재발의하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행령에서 조치가 취해지는 걸 약속해야 저희도 이 법을……

○**정희용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을 냈다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아니, 이것은 어떻든 원산지표시법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걸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 시행령을 좀 확대하는 것을……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나 내용이 있을 거니까 이병진 의원님하고 확인을 해서 추가할 품목이 있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1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11시57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17항 황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7번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총 6개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목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 법의 목적에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생산자 소득안정 지원, 고품질 인삼 공급, 국가전략산업 육성, 총 네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검토의견은 국가전략산업 부분은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현행법 3조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아닌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격 안정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인삼류 및 인삼 가격 안정에 대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경작이나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인삼 관련 교육시설이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기관을 지정할 경우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 우수관리(GAP)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GAP 기준을 추가할 경우 인삼의 안전성 및 인삼 생산자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준을 반영할 경우에 인삼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GAP 인증농가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18페이지에 GAP와 표준인삼경작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법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법은 조문의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정안 내신 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장 총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 법 개정안에 2장 경작 지원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하시고 문구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체계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손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음 심사 때 검토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사 때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12시에 마감짓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심사를 종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차수까지 준비될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때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농업정책관 윤원습  
축산정책관 안용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은영